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되었으며 주민이 직접 행정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의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연령제한 또한 만 18세로 낮춰지면서 정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사무처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서울특별시의회의 활동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